

학교법인 성광학원 정관

제정 1996.10.26.

최근개정(32차) 2022.12.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도야를 위한 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성광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차의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주소는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동교동)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대학의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장은 부속병원회계의 집행권을 부속병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잉여금의 처리)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

2. 감사 2인

②제1항의 임원 중 다음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상임감사 1인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3년

2. 감사 2년

②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선임된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총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⑤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사중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이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18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삭제

제20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건학이념 및 교육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24조(개방이사의 정수)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인으로 한다.

제25조(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이사회에서는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한다.

④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이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6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위원회에 두며,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각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②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총장 및 교원·강사·겸임교원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총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6.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이사회 의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이사회 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2조(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3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4조(평의위원회의 구성)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2. 직원 3인
3. 조교 1인
4. 학생 1인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제35조(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 단위별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

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로 한다. 다만,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는 추천없이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7조(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보선으로 선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9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40조(수익사업의 종류)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업
2. 제약업 및 의료용품 사업
3.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4. 생약제 및 의약품 도산매업
5.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41조(수익사업의 명칭) 제4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 삼봉빌딩사업소

2. 역삼제1빌딩사업소
3. 역삼제2빌딩사업소
4. 역삼제3빌딩사업소
5. 일신빌딩사업소
6. 청담빌딩사업소
7. 야탑빌딩사업소
8. 분당차병원장례식장

제42조(수익사업의 주소) 제41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봉빌딩사업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66(상계동)
2. 역삼제1빌딩사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5길 6-9(역삼동)
3. 역삼제2빌딩사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5길 6-5(역삼동)
4. 역삼제3빌딩사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6길 9(역삼동)
5. 일신빌딩사업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93(상계동)
6. 청담빌딩사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6길 14(청담동)
7. 야탑빌딩사업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별말로30번길 43(야탑동)
8. 분당차병원장례식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야탑동)

제43조(관리인) ①제41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44조(해산) 법인의 해산 사유는 법령에 따른다. 단,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는 사유로 해산 할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제46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원의 임용

제47조(교원) ①총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 및 면직은 총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최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으

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④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사항은 대학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강사와 겸임교원등) ①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신규임용(1년 미만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②제47조제1항의 교원과 제48조제1항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제외한 강사와 명예교수 등의 신규임용과 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과 협의하여 총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의 임용은 총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조교) 조교는 총장이 임용하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9조(임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50조(명예퇴직) ①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자진하여 퇴직하고 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절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

제51조(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3. 전공분야의 교육, 연구, 연수 또는 임상 등을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임시로 고용될 때

제52조(휴직의 기간) ①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1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51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51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51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51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5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2. 제51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5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51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51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51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51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12. 제51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1조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기간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

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51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54조(휴직교원의 처우) ①교원은 제51조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②삭제

③휴직한 교원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의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위임) 휴직과 복직은 총장이 명한다. 다만, 제51조제5호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징계) ①임용권자는 법령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7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2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직무

2. 징계의결의 기한

3.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4. 위원의 기피 등

5.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6.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7. 외부위원의 해촉

⑥기타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교원인사위원회

제57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강사 및 겸임교원등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8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강사 및 겸임교원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교원·강사 및 겸임교원등의 공개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0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절 직원

제61조(직원의 정원) 법인 및 법인이 설치한 대학 등 기관의 직원 정원은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

제62조(임용) ①학교법인의 직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대학의 직원에 대하여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삭제

④대학의 부속병원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부속병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3조(보수) ①직원의 보수는 직원의 직무 경력과 능력,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직원의 보수는 보수표에 의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4조(복무) ①직원은 학교법인, 대학, 기타 소속 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복무한다.

②이 규정은 근로에 관한 법에서 정한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아니된다.

③직원은 당해 법인 내 기관간에 전직하여 복무할 수 있다.

제65조(신분보장) ①임용권자는 직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아니한

다.

②임용권자는 직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임용권자는 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66조(위임) 임용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따라 총장, 병원장, 법인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7조(징계) 직원의 징계는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대학의 직원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총장이 이를 행할 수 있으며, 부속병원의 직원에 대하여도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부속병원의 장이 행할 수 있다.

제67조의1(청렴의무)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고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삭제)

제67조의2(행동강령) ① 제67조의1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는 행동강령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68조(법인 사무조직)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

②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국장을 둘 수 있으며, 이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법인사무국에는 하부조직으로 4개 이내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④기타 법인 사무조직의 세부 사항과 운영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69조(총장) ①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총장은 당해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⑤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둘 수 있다.

제70조(부총장) ①대학교에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연구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글로벌부총장을 두어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교학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부총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71조(대학, 대학원) ①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각 단과대학 및 각 대학원에 학장과 원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의 전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학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⑤대학과 대학원에서 제4항 이외 보직은 총장이 임용한다.

⑥대학 및 대학원의 하부조직과 운영, 학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과 규정으로 정한다.

제72조(처) ①대학의 본부에 기획, 교무, 교육, 학생, 입학, 사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처(處)를 둔다.

②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사무를 관장하는 처장은 일반직 2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각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처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⑤처에서 처장 이외 보직은 총장이 임용한다.

⑥각 처의 조직과 업무 등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3조(부속병원) ①대학교 산하에 부속 구미차병원을 둔다.

②부속병원에 병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병원을 통할한다.

④병원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⑤기타 부속병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참사 이상의 직

원으로 보 한다.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속시설의 부서 설치와 조직, 업무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5조(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인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 한다.

③기타 산학협력단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76조(공고)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7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8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기(년)	생년월일	주 소
이사장	차경섭	4	1919. 1. 4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삼봉리 산 19-14호
이 사	이유복	4	1927. 6.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Apt. 115-1001호
이 사	안재영	2	1929. 11. 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 쌍용Apt509-705호
이 사	장성운	4	1956. 5. 20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19-4 상아Apt. 2-802호
이 사	김한중	4	1948. 11. 2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Apt. 326-501호
이 사	조우현	2	1952. 7. 19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Apt. 525-302호
이 사	이상규	2	1952. 3.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 아름마을 407-1501호
감 사	권승희	2	1950. 5. 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2-3 개나리Apt. 33-704호
감 사	최윤근	1	1946. 9. 17	서울시 강남구 수서5단지 한아름Apt. 102-1006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임용 제청 된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며, 2002년 2월 28일까지 임용 제청되어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① 교수 : 정년
- ② 부교수 : 7년
- ③ 조교수 : 4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 정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호의 감사 정수에 대한 변경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이사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교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5.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5.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7.5.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9.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선임되는 총장의 이사 임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5.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09.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정관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총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선임되는 총장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05.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13 명	7등급계	명
일반직계	11 명	운전기사	명
2급 (참여)	1 명	목공기사	명
3급 (부참여)	1 명	건축기사	명
4급 (참사)	4 명	전기기사	명
5급 (부참사)	명	수도기사	명
6급 (주사)	1 명	교환원	명
7급 (부주사)	명	8등급계	명
8급 (서기)	3 명	운전기사	명
9급 (부서기)	1 명	목공기사	명
기술직계	명	건축기사	명
4급 (사서참사)	명	전기기사	명
5급 (사서부참사)	명	수도기사	명
6급 (사서)	명	교환원	명
(실험기사)	명	9등급계	명
7급 (부사서)	명	운전기사보	명
(실험기사)	명	목공기사보	명
8급 (사서보)	명	건축기사보	명
(실험기사보)	명	전기기사보	명
9급 (사서보)	명	수도기사보	명
(실험기사보)	명	교환원보	명
기능직계	2 명	10등급계	1 명
6등급계	1 명	운전기사보	명
운전기사	1 명	목공기사보	명
목공기사	명	건축기사보	명
건축기사	명	전기기사보	명
전기기사	명	수도기사보	명
수도기사	명	교환원보	명
교환원	명	고용원	1 명

(별표 4)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계	88 명	7등급계	2 명
일반직계	58 명	운전기사	1 명
2급 (참여)	3 명	목공기사	명
3급 (부참여)	6 명	건축기사	명
4급 (참사)	9 명	전기기사	1 명
5급 (부참사)	6 명	수도기사	명
6급 (주사)	15 명	교환원	명
7급 (부주사)	15 명	8등급계	3 명
8급 (서기)	2 명	운전기사	1 명
9급 (부서기)	2 명	목공기사	명
기술직계	14 명	건축기사	1 명
4급 (사서참사)	2 명	전기기사	명
(실험기사)	1 명	수도기사	1 명
5급 (사서부참사)	1 명	교환원	명
(실험기사)	1 명	9등급계	2 명
6급 (사서)	2 명	운전기사보	명
(실험기사)	1 명	목공기사보	1 명
7급 (부사서)	2 명	건축기사보	명
(실험기사)	1 명	전기기사보	명
8급 (사서보)	1 명	수도기사보	명
(실험기사보)	1 명	교환원보	1 명
9급 (사서보)	1 명	10등급계	5 명
(실험기사보)	명	운전기사보	명
기능직계	16 명	목공기사보	명
6등급계	4 명	건축기사보	명
운전기사	1 명	전기기사보	명
목공기사	명	수도기사보	명
건축기사	1 명	교환원보	명
전기기사	1 명	고용원	5 명
수도기사	명		
영양사	1 명		
교환원	명		

(별표 5) 부속병원 일반직원 정원

총계	637	명	6급(기사)	69	명
일반직계	70	명	정보처리		
2급 (참여)	3	명	건축		
3급 (부참여)	3	명	물리치료		
4급 (참사)	8	명	방사선		
5급 (부참사)	14	명	임상병리		
6급 (주사)	18	명	약사		
7급 (부주사)	13	명	영양		
8급 (서기)	11	명	의무기록		
9급 (부서기)		명	사회사업		
기술직계	309	명	의용공학		
4급(참사)	14	명	간호		
정보처리			사서		
건축			시청각		
물리치료			7급(부기사)	104	명
방사선			정보처리		
임상병리			건축		
약사			물리치료		
영양			방사선		
의무기록			임상병리		
사회사업			약사		
의용공학			영양		
간호			의무기록		
사서			사회사업		
시청각			의용공학		
5급(부참사)	31	명	간호		
정보처리			사서		
건축			시청각		
물리치료			8급(기원)	91	명
방사선			정보처리		
임상병리			건축		
약사			물리치료		
영양			방사선		
의무기록			임상병리		
사회사업			약사		
의용공학			영양		
간호			의무기록		
사서			사회사업		
시청각			의용공학		
			간호		
			사서		
			시청각		

기능직계	118 명	9등급	10 명
6등급	29 명	운전	
운전		목공	
목공		건축	
건축		전기	
전기		수도	
수도		영양사	
영양사		교환원	
교환원		조리사	
조리사		의료기능	
의료기능		10등급	21 명
7등급	45 명	운전	
운전		목공	
목공		건축	
건축		전기	
전기		수도	
수도		영양사	
영양사		교환원	
교환원		조리사	
조리사		의료기능	
의료기능		별정직계	140 명
8등급	13 명	5급대우(연구강사)	20 명
운전		5급대우(전문의)	60 명
목공		6급대우(전공의)	60 명
건축			
전기			
수도			
영양사			
교환원			
조리사			
의료기능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8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u>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	제18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u>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	이사장 임기 변경
제67조의1(청렴의무) ① <u>이사장, 법인의 임직원 및 대학의 총장과 교직원</u> 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u>제 1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u>	제67조의1(청렴의무) <u>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 라고 한다)</u> 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삭제)	• 자구 수정 • 제67조의1 제2항의 이동 및 구체화
<신설>	제67조의2(행동강령) ① <u>제67조의1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별도로 정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 정하는 행동강령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u>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u> <u>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u>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제2항 및 제3항 반영

	<u>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u> <u>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u> <u>4.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u>	
	부 칙(개정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